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16

발의연월일: 2024. 7. 18.

발 의 자: 강명구·이상식·엄태영

구자근 • 한지아 • 강선영

고동진 · 김용태 · 서명옥

김정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6조에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 조회를 요청하거나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정신질환 등 건강상 결격사유 확인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건강진단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적 공간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업무 특성상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는 돌봄의 질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됨.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정신질환이나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모들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뢰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6조의2).

법률 제 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중 "범죄경력조회"를 "개인정보 조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병력(病歷) 등 개인정보 조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죄경력조회를"을 "개인정보 조회를"로, "수사기관의 장은"을 "관계기관의 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범위, 개인정보의 내용, 회신 방법 등 그 밖에 개인정보의 조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 제6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 한 범죄경력조회) ① 특별시장 한 개인정보 조회) ①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 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아이돌보 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제6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기 ----관계기 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관의 장에게 범죄경력, 병력(病 歷) 등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를 요청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를-----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 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 <신 설> 계기관의 범위, 개인정보의 내 용, 회신방법 등 그 밖에 개인 정보의 조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